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69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 (안 제98조의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4.

다. 회 부 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

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3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 (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u>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u>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한국은행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안, 의안번호 제8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수익은 대부분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며, 환율과 금리, 외화자산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데,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의 등락이 큰 편임.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는 2조 3,439억원이며 법인지방소득세¹⁾는 2,344억원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이 2020년 및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음.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에 따라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인세	7,263	9,689	12,219	9,832	18,583	25,665	26,160	6,829	4,562	23,439
지방소득세	726	969	1,222	983	1,858	2,566	2,616	683	456	2,344
합계	7,989	10,658	13,441	10,815	20,441	28,231	28,776	7,512	5,018	25,782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이처럼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IMF는 중앙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이 과세소득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재정독립성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²⁾한 바 있으며, 중앙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³⁾고 밝힌 바 있음.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 스웨덴, 스위스, 호주, 독일 등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IMF, “How Should a Central Bank Be Treated for Tax Purposes?”, 2007

3) IMF, “A Central Bank’s Guid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20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법인세 납부 현황]

구분	법인세 납부 여부	자본금 출자 형태
미연준	면제	회원은행 출자
ECB	면제	회원국 중앙은행 출자
스웨덴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스위스중앙은행	면제	정부 및 민간 출자
호주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독일연방은행	면제	정부 출자
룩셈부르크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노르웨이은행	면제	정부 출자
덴마크국립은행	면제	정부 출자
중화민국중앙은행(대만)	면제	정부 출자
인도준비은행	면제	정부 출자
프랑스은행	납부	정부 출자
영란은행(banking)	납부	정부 출자
일본은행	납부	정부 및 민간 출자

자료: 한국은행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정부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기순이익의 30%를 「한국은행법」 제99조4)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
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 4)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
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
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모두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법인세 실적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늘어나게 됨. 일례로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세전이익은 10조 3,972억원이었는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등 납부 실적과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8조 514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7조 2,780억원으로 추산되어 약 7,734억원의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 여부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원)

구분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 면제시
세 전 이익(A)	103,972	
법인세등(B)	25,782	0
당기순이익(C=A-B)	78,189	103,972
법정적립금(D=C×30%)	23,457	31,192
정부 세입(E=C×70%)	54,732	72,780
정부재정(B+E)	80,514	72,780

주: 임의적립금은 없다고 가정

이처럼 한국은행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정부 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세전 이익 하에서도 법인세 면제시 당기순이익 자체가 늘어나 법정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만큼 현행 법정적립금 비율인 30%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8조의2(법인세 부과 면제) 한 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의처

02)6788-5157